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지정서**

**‘제1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ICT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실증특례 승인 공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 제6항 및 제42조의4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를 부여한 내용을 공고 합니다.

2020년 10월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지정번호	2020-15호	지정연월일	2020년 10월 8일
신청인	회사명(성명) 엘비에스테크		사업자(법인)등록번호 257-08-00539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47, 진양빌딩 308호		
	대표자 이시완		
지정 대상 기술·서비스	명칭 및 주요내용 (명칭) 시작장애인 보행경로 안내 서비스 (주요내용) 시각장애인이 소지한 스마트폰의 위치 정보를 활용하여 사용자 주변의 상업시설·공공 시설·편의시설 등을 음성으로 안내 하는 서비스		
유효기간	과기정통부 장관이 부과한 조건을 이행하고 책임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받은 날로부터 2년		
지정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례내용) 엘비에스테크가 ‘시각장애인 보행안내 서비스’ 상에서 건물 출입구 및 건물 내 이동 경로 정보를 시각장애인에게 안내하기 위해 건축물 평면도를 열람·발급받을 수 있도록 2년간 실증특례 부여</li> <li>○ (실증범위) 성남시 중원구 일대 건물</li> <li>○ (조건) 다음의 부가조건 준수 필요</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lt; 부가 조건 &gt;</p> <p>① 실증지역에 한하여 공공의 사용이 빈번한 건축물(공공청사, 공공기관 등)의 경우 건축물대장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소유자의 동의절차 없이도 건축물 현황도(평면도) 발급 ※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인 경우는 제외</p> <p>② 상가 등 다중이용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제2호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층 제외)은 보안 등의 사유로 다른 법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건축물 현황도 발급</p> <p>③ 건축물 현황도(평면도)에 대한 보안대책(보관, 폐기 등) 계획서, 해당 사업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것임을 약속하는 서약서 제출</p> </div>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4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서를 발급합니다.

2020년 10월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지정서

지정번호	2020-16호	지정연월일	2020년 10월 8일
신청인	회사명(성명) (주)다자오	사업자(법인)등록번호 459-81-0031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수목원길 39-1, 1층		
	대표자 남성준		
지정 대상 기술·서비스	명칭 및 주요내용 (명칭)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주요내용) 농어촌 빈집을 소유주로부터 장기임대(10년)하여 재생한 후, 중개 플랫폼을 활용해 여행객들에게 숙박시설로 제공하는 서비스		
유효기간	과기정통부 장관이 부과한 조건을 이행하고 책임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받은 날로부터 2년		
지정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례 내용)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빈집으로서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의 연면적 230㎡미만의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소유주로부터 장기 임대하여 재생한 경우 본인거주 없이 농어촌민박업을 할 수 있도록 다자오의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에 대해 2년간 실증특례 부여</li> <li>○ (실증범위) 실증특례는 5개 이내 시·군·구(시·도별 1개 시·군·구)에서 총 50채 이내(지자체별 15채 이내) 실시하며, 영업일수는 연 300일 이내 실시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는 행정시이므로 2개시 모두 가능</li> <li>○ (조건) 붙임의 사업요건 등 '부가 조건'을 준수할 것</li> </ul>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4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서를 발급합니다.

2020년 10월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붙임 부가 조건

### < 부가 조건 >

#### ① 사업요건

##### ○ 지역 요건 :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

\* 농어촌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

\*\* 준농어촌 : 광역시 자치구의 구역 중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 ○ 빈집 요건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빈집\*

\* 빈집: 시장·군수·구청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

##### ○ 주택 요건 : 연면적 230㎡미만의 단독주택\*

\* 단독주택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별표 1, 1호 가목의 단독주택(나목 다중주택, 다목 다가구주택은 불포함)

- 필지 내 근린생활시설 등 다른 용도별 건축물이 있는 단독주택은 제외

##### ○ 기타 요건

- 해당 시·군·구나 일정거리(예시 : 반경 20km) 이내 주소지로 하는 사무소, 상시 관리인력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계획서 포함 내용(안) : 리모델링계획서, 운영계획서(객실 및 부대시설 현황 임대차현황, 안전·서비스 이행계획, 주민협의 등), 지자체 협의 사항

- 단기 임대거래를 제한하기 위해 임차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로 제한

- 숙박·취사시설 제공(식사제공 불가)

- 무분별한 주택 개발 방지를 위해 기존 주택의 연면적 30% 이내 확대의 범위 내에서 리모델링\* 허용(층수 확대는 불가)

\* (리모델링)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

#### ② 안전 및 서비스

#####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 기준 준수(시행규칙 별표 3의2) 및 시설 기준\*(시행규칙 별표 3) 충족

\*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휴대용 비상조명등, 완강기, 음식 조리시 위생시설, 일산화탄소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등

- 화재보험 및 책임보험 등 의무 가입
  - 사고발생시 즉각 대응이 가능한 전담 대응인력 보유, 안전시스템\* 구축 등 체계 마련
    - \* 예시 : 보안전문업체 계약, CCTV 등 설치
  - 사고 예방, 사고발생시 대처를 위한 숙박객용 매뉴얼 비치 및 안내
- ③ 마을주민 협의**
- 마을주민 상생협력 방안 논의 등 주민협의 절차 이행
    - △마을 기부금 적립, △소음, 주차, 안전 관련 민원 대응 방안 등 협의
  - 사업장 연접 주택 가구의 동의\*는 반드시 포함
    - \* 다가구주택인 경우 과반수 가구 이상의 동의
- ④ 관리·감독**
- 마을주민 및 이용객 민원 처리 내역, 사업장별 영업일, 이용자 수 등 자료를 농식품부와 지자체에 제공
  - 실증특례 기간 중 부가조건 및 실증범위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지정서

지정번호	2020-17호	지정연월일	2020년 10월 8일
신청인	회사명(성명) 우아한형제들	사업자(법인)등록번호 120-87-6576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서울시 송파구 위례성대로2(방이동, 장은빌딩)		
	대표자 김범준		
지정 대상 기술·서비스	명칭 및 주요내용 (명칭)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 (주요내용) 카메라와 센서를 부착한 자율주행 배달로봇이 위치·경로를 인식하며 음식을 수령·배달하고, 자율주행 관제센터에서 원격제어 및 모니터링하는 서비스		
유효기간	과기정통부 장관이 부과한 조건을 이행하고 책임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받은 날로부터 2년		
지정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례내용) '우아한형제들'이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으로 음식 배달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2년간 실증특례 부여</li> <li>○ (실증범위) 서울 건국대학교, 수원 광고 호수공원 일대에서 자율주행 배달로봇 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실증범위 확장 시 관계부처와 협의</li> <li>○ (조건) 불입의 '부가 조건'을 준수할 것</li> </ul>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4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서를 발급합니다.

2020년 10월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부가 조건 >**

- ① **안전한 주행환경 확보를 위해 경찰청에서 제시한 조치 이행 필요**
  - △경찰청과 협의하여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한 기준(실내 안전성 시험) 검증 후 실증 시작(단, 협의된 제한 구역에서는 실증 준비를 위해 실내 안전성 시험 전 준비 운행 가능)
  - △명확한 실증코스 지정, 충분한 보도 폭 확보, 불량노면에 대한 노면 재포장 및 보도턱이 높은 부분 등 정비, 현장요원 운전자 지정, 실증지역 주요구간에 안내 플래카드 설치, 자율주행 로봇임을 알리는 표지를 로봇 외부에 부착 등
- ② **실증지역의 공원관리청이 정한 통행구간을 출입하되, 공원이용객의 안전을 고려한 안전관리대책에 대해 공원관리청과 협의 필요**
- ③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제시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 이행 필요**
  - △음식물 주문고객 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영상)정보는 일정기간 보관 후 삭제할 것
  - △배달로봇이 배송중 촬영한 것으로서 사전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개인(영상) 정보는 배송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삭제할 것, 다만 민원, 사고 접수 등을 대비하여 개인(영상)정보에 비식별 조치를 할 경우 최대 3일 보관 후 삭제
    - ※ 배달 중 사고 발생 시, 해당 촬영영상은 피해자 구제 등 사고 처리 시까지 보관 가능
  - △자율주행 로봇이 촬영한 영상에서 개인정보를 별도로 저장하지 않고, 보호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근거가 없는 한 자율주행 관제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을 것
  - △배달로봇의 운용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촬영범위, 시간, 방법 등을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할 것, 배달로봇 외부에 안내판을 부착 하거나, 점멸 표시 등 영상을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함
  - △개인(영상)정보의 외부 반출을 금지하고, 개인(영상)정보 송·수신 시 암호화하는 등 안전성 확보조치를 이행할 것, 개인(영상)정보 등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를 마련 하고, 사업목적 달성 후 관련 영상자료를 삭제하는 등 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기타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에 따른 보호원칙 및 조치사항 준수 필요, 실증진행 상황에 대해 개보위의 점검 요청 시 적극 협조
- ④ **승강기 무선통신 제어를 위한 통신모듈 등 설치 시 행안부의 '승강기 설치 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안전검사의 특례 인정을 받을 것**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지정서**

지정번호	2020-18호	지정연월일	2020년 10월 8일
신청인	회사명(성명) (주)와이파워원		사업자(법인)등록번호 627-81-00857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전 유성구 문지로 193 진리관 T106호		
	대표자 조동호		
지정 대상 기술·서비스	명칭 및 주요내용 (명칭) 85KHz 활용 전기버스 무선충전 서비스 (주요내용) 전기버스에 무선충전장치(수신부)를 부착하고, 버스정류장 하부에 무선충전기(송신부)를 매설하여 버스정류장 진입 전후 및 정차 시 무선충전하는 서비스		
유효기간	과기정통부 장관이 부과한 조건을 이행하고 책임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받은 날로부터 2년		
지정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례내용) 와이파워원이 '85KHz 무선충전 기술 활용 전기버스 무선충전 서비스'를 실증 할 수 있도록 2년간 실증특례 부여</li> <li>○ (실증범위) ①대전시 대덕연구개발특구 순환 전기버스 노선 중 한국과학기술원(KAIST) 내 버스정류장 2곳, ②전기버스 최대 7대(올해 2대 + 내년 5대 증차 예정)로 한정하되, 실증범위 확장 시 관계부처와 협의</li> <li>○ (조건) 붙임의 '부가 조건'을 준수할 것</li> </ul>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4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서를 발급합니다.

2020년 10월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부가 조건 >**

- ① 전파플래이그라운드(서울 용산) 등 대형 차폐시설 내에서 간섭분석을 실시하여 해당 서비스가 타대역의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하고 해당 결과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할 것
- ② 실사용 환경 실증 진행 시 주파수 혼·간섭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용자와 협의 후 진행 할 것
- ③ 향후 85kHz 대역 무선전력전송 용도 공급을 위한 기술기준 개정 등 규제개선 진행 시 자료제출 등 협조할 것
- ④ 야외 실증 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준수 및 필요한 경우 안전조치
- ⑤ 전기버스에 무선충전 장치 설치 시 교통안전공단의 튜닝 승인을 받을 것  
※ 튜닝에 따른 차량총중량 증가 시 중량 증가량 만큼 감소대책 마련, 무선충전 장치 설치 시 최소한의 안전기준에 적합 필요
- ⑥ 특례신청 지역(대전 대덕구)에서 도로하부에 무선충전시설 매설 시 지하충전시설의 안전 확인 및 도로점용허가 여부는 해당 도로 관리청의 의견 수렴 후 실증특례를 진행할 것

**< 도로 공사 관련 안전성 확보를 위한 부가조건(대전시) >**

- 본 공사 시행중 또는 완료 후 본 시설물로 인하여 도로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피허가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고 전액 변상하고 원상복구
- 조건부 허가조건 관련 준수사항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향후 도로의 확장 또는 개설, 개축 및 유지관리 등 도로관리청에서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조건을 추가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피허가자는 손해배상 및 보상의 청구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피허가자의 부담으로 시설물을 이전 · 제거하고 도로를 원상으로 복구
- 도시관리계획상 노폭 20m이상 도로(중로1류 이상)의 차도부에 굴착을 수반한 도로굴착 및 시설물 설치시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와 재협의
- 도시관리계획상 노폭 20m 이상 도로의 보도부(차도횡단부분 포함)와 노폭 20m미만 도로에 관련된 도로굴착시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사전협의의 필요
- 도로공사 시행과 관련하여 「도로법」 등 다른 법규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법규에 따른 제반 절차를 이행
- 도로 내 지장물(상·하수도, 소화전, 전기시설, 통신시설, 도시가스, 가로등, 가로수 및 수목 등), 도로안전시설(시선유도표지, 충격방지시설 등) 및 교통안전시설(노면표시, 안전표시 등) 철거, 이설, 신설 등은 관련기관(부서)과 별도 협의를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주요 지하매설물과 저촉되는 공사는 시설물 관리자에게 사전에 연락하여 해당 시설물 관리자의 입회하에 안전 시공

- ⑦ 실증특례 기간 동안 충전요금을 부과할 경우, 충전 전력량은 계량법 제14조에 따라 형식승인받은 전력량계로 계량할 것
- ⑧ 관계기관(전기안전공사 등), 관련 전문가 등과 협의하여 무선 전기차충전기의 안전성 확보방안 마련
- ⑨ 관계기관(전기안전공사 등) 및 전문가가 도출한 안전기준(시험항목)에 따른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제출
- ⑩ 전기사업법에 따른 사용 전 검사 결과 제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지정서**

지정번호	2020-19호	지정연월일	2020년 10월 8일
신청인	회사명(성명) 미디어스코프㈜		사업자(법인)등록번호 220-88-6728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길 50, B동 4층 143호(중학동, 더케이트윈타워)		
	대표자 김기훈		
지정 대상 기술·서비스	명칭 및 주요내용 (명칭) 모바일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 (주요내용) 쇼핑몰·영화관·터미널 등 공공장소에 개방형 노래부스를 설치하고, 자체 개발한 모바일 앱 노래 반주기를 연동하여 운영(1~2대 규모)하는 서비스		
유효기간	과기정통부 장관이 부과한 조건을 이행하고 책임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받은 날로부터 2년		
지정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례내용) 미디어스코프의 '모바일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위한 일부 요건을 면제하고 2년간 실증특례 부여 ※ 문체부에서 임시 서식 제공 및 지자체 공문을 통해 해당사항 안내</li> <li>○ (실증범위) 장소당 2대 이내로 설치하되, 쇼핑몰·영화관 등 다수 설치가 필요한 장소는 사전에 특정하여 소방청 협의 하에 설치</li> <li>○ (조건) 붙임의 '부가 조건'을 준수할 것</li> </ul>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4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서를 발급합니다.

2020년 10월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붙임 부가 조건

## < 부가 조건(안) >

○ (사업 및 운영주체) 직영 운영 시 미디어스코프, 위탁 운영 시 위탁 사업자를 사업주체로 하여, 주류 반입 및 청소년 일탈행위 방지 등 관리 책임 부과

\* 설치장소 관리, 운영상태 확인 등 미디어스코프가 중앙에서 모니터링 가능

⇒ 계약서 문구(안) : OOO(사업자주체)는 본 제품의 건전한 이용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감독과 다음에 열거된 행위를 방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1. 부스내 주류 반입 및 흡연행위
2. 사회상규에 따른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
3. 기타 본 제품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해당하는 행위

OOO(사업자주체)는 본 제품의 건전한 이용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을 참석하여야 한다.

○ (실증범위) 장소별 2대 이내로 설치하되, 쇼핑몰, 영화관, 휴게소 등 다수 설치(3대-10대 이내)가 필요한 장소는 사전 소방청과 협의 하에 설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개시 후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6개월
쇼핑몰, 영화관, 테마파크	대형 숙박시설	문화·복지시설	공항, 터미널 등	군부대, 교육시설 등

○ (음악산업법 준수) 미디어스코프의 모바일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에 적용 하기에 부적절한 요건 이외사항은 모두 준수

## 임시허가증(임시허가조건 변경 승인)

임시허가번호	2019-05-01호	임시허가 연월일 (조건 변경일)	2019년 5월 29일(2020년 10월 8일)
신청인	회사명(성명) (주)텔라움	사업자(법인)등록번호 130-81-35380	
	주소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 312 (도당동)		
	대표자 김형엽		
임시허가 대상 기술·서비스 명칭 및 주요 내용	명칭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주요내용 통신사 무인기지국 전원함에 설치되는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에 IoT 기술을 결합하여, 원격으로 전원상태를 모니터링·점검하고 복구하는 기술		
유효기간	○ 2019.9.6 ~ 2021.9.5		* 유효기간은 변동없이 기존과 동일
임시허가조건 (변경 사항)	○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곳(철도, 고속도로, 공항이착륙장 등)에 설치된 전원함의 안정적인 운영 및 현장 출동비용 절감을 위해 임시허가조건 변경신청 - 원격전원관리시스템의 적용범위를 통신사 무인기지국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곳으로 확대 * 철도(철도안전법), 고속도로(도로교통법), 공항이착륙장(공항시설법) 등		
	구분	변경 전 임시허가조건	변경 후 내용
적용 범위	독립된 무인 통신중계소·기지국	독립된 무인 통신중계소·기지국	유지
	-	관련법령에 의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곳	확대
* 지정기업은 원격전원관리시스템 설치 수요처에서 사전에 설치장소의 적합성(관련법령에 의해 일반인의 출입 금지 또는 제한) 검토를 받은 후 그 결과를 국표원·과기정통부에 제출			
* 변경 사항 이외의 특례내용, 실증범위, 부가조건은 기존과 동일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임시허가증을 발급합니다.

2020년 10월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